

의안번호	제 44 호
의결연월일	1999. . .

의결사항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1999. 9. 11.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일자 : 99. 9. 11.

제출일자 : 사 천 시 장

1. 재 정 이 유

-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날로 증가되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 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 다. 지정절차(안 제4조)
- 라. 지정해제(안 제5조)
- 마.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안 제6조)
- 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안 제7조)

3. 법 적 근 거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설정)

4. 재 정 조 례 (안) : 별첨

5. 입 법 예 고

- 가. 예고기간 : 99. 7. 22 - 8. 10(20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게재
-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이라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천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3 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

제 8 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